

2-1-2 학칙 시행 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예수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입학 및 편입학

제2조(입학) 학칙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대학교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<개정 2004.10.18, 2005.6.13, 2006.9.13, 2011.3.1., 2011.9.9., 2018.3.21., 2021.11.11>

학부	개설전공	입학정원
간호학부	간호학	115명
1개 학부		115명

제3조(편입학) ① 학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을 인정할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.
② 학칙 제 14조에 의한 편입학은 3,4학년에 허용한다.<개정 2014.3.11>
③ 편입학 전형의 방법,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 한다.

제 3 장 등 록

제4조(학기등록) 학생은 매 학기 초 총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9.13>

제 4 장 수강신청, 계절학기

제5조(수강신청) ① 수강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<개정 2015.2.11.>

1.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, 교무처장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, 교양과목, 전공과목별로 나누어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8.24>
2. <삭제 2017.8.24>

3. 수강신청은 본인 책임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9.13>

4. 재수강 절차에 따라 재수강 신청을 한 경우 수강신청확인서에서 해당과목이 재수강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5.2.11., 2018.11.28., 2023.2.6.>

② 장애학생은 일반학생 수강신청 전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,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하여 지원한다. <신설 2020.6.9.>

제5조의 2(확인 및 변경) ①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변경은 확인 및 변경 기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, 기간 완료 후에는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처에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를 받고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28.>

[본조신설 2015.2.11.]

제6조(신청학점) ①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이상, 21학점 이하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학년의 최소 수강학점은 7학점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직과정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및 편입생은 24학점 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4.3.16, 2006.9.13., 2009.3.1., 2017.2.17., 2019.1.30., 2019.9.10., 2023.7.1.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①항의 최소 수강학점 기준적용을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3.3.14>

제7조(계절학기의 개설) ① 학칙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 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계절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명, 학점, 개설일자, 등록방법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.

제 5 장 휴학, 복학, 퇴학, 등록금 대체 및 반환

제8조(휴학)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학칙시행세칙 제8조 2항에 해당하는 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창업휴학의 경우 총장은 창업의 업종 및 타당성 등을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.<개정 2016.4.6>

1. 병역휴학 : 군입영통지서(소집통지서)
2. 질병휴학 :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
3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: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4. 창업휴학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(법인사업자에 한함)
5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

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

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9.13, 2016.4.6>

1. 군입대로 인한 휴학 : 군 입영일(소집일) 1일전까지. 단, 등록 후 휴학처리 할 수 있으며, 휴학사유 발생일은 휴학원 제출일로 한다.<개정 2016.9.28>

2. 군입대를 제외한 휴학 : 등록 후 휴학은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,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확정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<개정 2016.9.28>

3. 질병,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: 학기말 시험 시작 일주일 이전

③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등은 질병 및 병역, 임신·출산·육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7.3.1, 2014.3.11, 2016.4.6>

④ 휴학사유별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신설 2016.4.6>

1. 병역 : 2년 이내<개정 2024.9.5.>

2. 창업휴학 : 최대 2년 이내

3. 임신·출산·육아 : 최대 3년 이내

4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사유발생 시 총장이 허가하는 기간

⑤ 군휴학자가 입영(소집)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입대가 최소(귀향)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거나, 복학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4.6>

⑥ 휴학 신청자가 휴학사유의 상실로 인하여 휴학신청 후 2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. 단, 학기개시 후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연기간은 결석처리 한다.<신설 2016.4.6>

제9조(복학) 휴학 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0조(퇴학) 질병 또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1조(등록금 대체 및 반환) 휴학자의 등록금대체 및 반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6 장 이수과목

제12조(교양과목) ① 교양과목은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, 교양필수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24, 2015.2.11>

② 교양 선택과목은 개설된 가상강좌(On-Line 개설교과목)중 매학기 1개 교과목(2또

는 3학점)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우리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.<개정 2006.9.13>

③ 가상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.<개정 2006.9.13.>

제12조의 2(K-MOOC 학점인정) ①K-MOOC (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)라 함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의미한다.

② K-MOOC 강좌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1학점, 재학기간 내 최대 3학점 이내로 한다.

③ K-MOOC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신청편람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7.18.]

제13조 <삭제 2023.2.6>

제14조(전공기초교과목) 전공기초 교과목은 전공의 기초학문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전공과목) ① 전공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해야 한다.

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.

③ <삭제 2008.3.24>

④ 전공실습의 시간 및 학점은 따로 정한다.

제16조(편입학한 학생의 교과과정 취득학점 인정) ① <삭제 2006.9.13>

② 편입학 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교무처장의 제청에 따라 교양과목과 기타과목학점의 일부를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우리대학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 편입학 한 학생은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. 단 의료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편입학 학생은 우리대학교에서 3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9.13, 2014.3.11>

④ <삭제 2006.9.13>

⑤ 학칙 제 14조에 의하여 편입학 한 학생은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9.13>

⑥ 국내.외 다른 대학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이를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06.9.13>

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06.9.13>

제17조(재입학자의 취득학점 인정)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또는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

제 7 장 출석출강 및 휴보강<개정 2015.2.11.,2020.9.8>

제18조(확인 및 변경)<삭제 2015.2.11>

제18조의 2(출석확인) ① 교수는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교수는 학생의 출석 상황을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이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의 교과목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.

③ 교수는 결석생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학부장에게 통보하고, 학부장은 지도 교수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한다.<개정 2019.7.18.,2019.9.10>

④ 지각은 수업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⑤ 출석확인은 개강일을 시작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로 한다. 단, 폐강과목 신청으로 인한 수강신청 변경 및 군 복학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복학이 늦은 경우에 한하여는 그 허가일을 시작으로 한다.<개정 2015.9.11.>

[본조신설 2015.2.11.]

제18조의3(출석인정) ①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출석인정 범위와 기간은 출결관리 내규에 따른다.<개정 2023.2.6.>

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받은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④ 출석인정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1/4이내에서 허용한다.<신설 2017.2.17.><개정 2023.2.6.>

[본조신설 2015.2.11.]

제19조(철회) <삭제 2015.2.11.>

제19조의 2(강의상황보고) ①학부장은 교수의 출.결강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학부장은 매일 강의 실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[본조신설 2015.2.11.]

제19조의 3(휴·결강 및 보강) ① 학사일정 계획에 없는 휴강 또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휴·보강 내역을 등록하고 소속 학부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승인받은 후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강일 직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.

② 보강계획 시 교원은 해당 과목 수강 학생들과 협의하여 보강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수업계획서에 공지 하여야 한다.

③ 교무처는 매학기 공휴일 보강 계획을 수립한다.

[본조신설 2015.2.11.] <전문개정 2019.7.18., 2020.9.8.>

제19조의 4(기타) 출석출강 및 휴보강 미준수 교원에 대한 처리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전한다.

[본조신설 2020.9.8]

제 8 장 시험성적평가

제20조(시험) ① 모든 교과목은 매 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.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, 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시험, 실습,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1조(성적평가)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다음 등급표에 의하고, 상대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03.9.23, 2015.2.11>

실점	등급	평점	실점	등급	평점
95-100	A+	4.5	90-94	A ⁰	4.0
85-89	B+	3.5	80-84	B ⁰	3.0
75-79	C+	2.5	70-74	C ⁰	2.0
65-69	D+	1.5	60-64	D ⁰	1.0
0-59	F	0			

제22조(학사경고) 매 학기 성적의 평균이 1.7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. 단, 졸업 대상자 중 당해학기 성적 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된다. <개정 2003.9.23, 2013.3.14., 2014.3.11., 2018.11.28>

제22조의 2(학사경고 및 학습부진 조치) ① 학사경고자는 매학기 학사경고 시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1회이상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15.2.11>

② 직전학기까지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제한한다. 단,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수강학점 제한을 하지 않는다.<개정 2017.11.21., 2023.7.1.>

③ 학기말 성적의 평균이 2.0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교수로부터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11.21.><개정 2018.11.28>

④ 2.0미만자 지도교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지도·의뢰하고 상담결과를 점검해야 한다. <신설 2017.11.21.><개정 2018.11.28>

[본조신설 2015.2.11.]

제23조(유급) ① 학칙 제 58조에 의하여 유급 시킬 수 있다.<개정 2004.12.1, 2009.3.1>

② 유급된 학생의 해당 학년 전 과목 취득학점은 무효가 된다.<개정 2014.3.11>

- ③ <삭제 2013.3.14>
- ④ <삭제 2006.9.13>
- ⑤ 유급을 원하는 자는 유급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9.13>
- ⑥ 유급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<신설 2006.9.13>
 1. 재학생 및 복학생 : 매 학기 성적사정일로부터 다음 학기 초 4주 이내
 2. 졸업예정자 : 졸업사정일로부터 2주 이내

제23조의2(유급 조치) 매학년도 성적으로 인한 유급자는 해당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고, 대학주관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2.11.>

제23조의3(간호학부 유급 조건) ① 간호학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.<신설 2006.9.13>

1. 해당학년 1학기/2학기 평점평균 평균이 1.7점 미만인 자<개정 2013.3.14., 2014.3.11., 2024.9.5.>
2. <삭제 2013.3.14>
3. 본인이 원할 경우

제24조(시험불응)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(중간, 학기말)중 그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기타 시험불응과 관련한 사항은 성적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4.2.6.>

제25조(성적제출)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처리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. <개정 2024.9.5.>

- ②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성적이 없는 것은 “F”로 처리한다. <개정 2024.9.5.>
- ③ 결석기간이 강의실시 기간의 4분의 1 이상일 때는 학칙 제 43조 “출석의무”에 의거 성적을 “F”로 처리한다. <개정 2024.9.5.>
- ④ <삭제 2024.9.5.>

제26조(성적확인) <삭제 2019.9.10>

제27조(성적정정)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2차에 걸친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교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 이후 성적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2019.9.10>

- ② 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교원은 성적정정기간 내에 평가오류 또는 입력실수 여부를 검토하고, 평가에 반영 및 성적정정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9.10>
- ③ 1차 기간에 교원의 평가오류 또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 명확한 오류가 발견되고,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교원이 직접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<신설2019.9.10>
- ④ 2차 기간에 교원의 명확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, 해당 교원은 성적정정원

및 증빙서류(시험지, 출석부, 과제물 등)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9.9.10.> <개정 2024.9.5.>

제28조(교과목의 재수강) ① C+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2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. 단, 장애학생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수강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5.2.11., 2018.11.28., 2023.2.6.>

②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면 성적증명서에 재수강한 성적만 인정된다.<개정 2015.2.11>

③ 재수강 후 취득하는 성적은 최대 89(B+)까지만 인정하며, 성적증명서의 취득한 수강과목 앞에 'R' 표기하여 재수강 사실을 명시한다.<개정 2015.2.11>

④ 동일과목 재수강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 변경 및 과목명변경 등 특별한 경우, 교양/교직/일반과목은 교무처장, 전공과목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이 대체과목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15.2.11>

⑤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성적을 다시 재수강 할 경우 최고점수는 우리대학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5.2.11., 2023.7.1.>

제29조(학사경고자 취득학점 제한) 학칙 제 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기말의 평점 평균이 1.7 미만인 학생의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한다.<개정 2003.9.23., 2009.3.1., 2018.11.28>

제30조(초과취득학점의 처리) <삭제 2015.2.11>

제31조(휴학자의 성적처리)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제31조의 2(성적의 유보 인정) ① 교육 실습 및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학부장을 경유, 총장의 성적유보 인정 승인을 받는다.

② 제1항에 의거 성적 유보 인정을 승인받은 해당 학생의 성적은 이를 유보하였다가 복학 후 수강 신청한 학기에 인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7.18.]

제32조(징계 받은 자 등의 성적처리)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② 시험부정행위로 확인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"F(0점)"로 처리한다. 단, 시험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는 징계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9., 2024.9.5.>

제33조(계절학기 성적처리) ①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, 실점, 평점평균에 포함한다.<개정 2006.9.13, 2009.3.1>

② 휴학 자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, 휴학자의 성적처리는 재학생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한다. 다만, 휴학 자가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

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.

제34조(실점 및 평점평균의 계산) ① 학칙 제 44조에 의한 성적의 실점 또는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실점 또는 평점을 곱한 실점 또는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에 두 자리까지 계산하여 사사오입한다. 그러나 수강과목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03.9.23, 2006.9.13, 2009.3.1>

②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.<개정 2003.9.23>

1. 실점평균
2. 평점평균
3. 성적취득 학점 수

제 9 장 수료 및 졸업

제35조(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) ①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

1. 제 1학년 수료
 - 간호학부 : 2학기 이상 등록하고 35학점 이상 이수 자<개정 2020.6.9>
 - 사회복지학부 : 2학기 이상 등록하고 33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2019.1.30. 2020.4.29., 2020.6.9>
2. 제 2학년 수료
 - 간호학부 : 4학기 이상 등록하고 70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 2020.6.9>
 - 사회복지학부 : 4학기 이상 등록하고 66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2019.1.30. 2020.4.29., 2020.6.9>
3. 제 3학년 수료
 - 간호학부 : 6학기 이상 등록하고 105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 2004.10.18.>
 - 사회복지학부 : 6학기 이상 등록하고 99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 2004.10.18., 2019.1.30., 2020.4.29.>
4. 제 4학년 수료
 - 간호학부 : 8학기 이상 등록하고 138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 2004.10.18., 209.1.30., 2020.4.29.>
 - 사회복지학부 : 8학기 이상 등록하고 132학점 이상 이수 자 <개정 2004.10.18., 2019.1.30., 2020.4.29.>

② 제 1항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(별지 서식 1호)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36조(등록학기 및 총 취득학점) 4년(8학기)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, 대학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9.13>

제37조(분야별 취득학점)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과목 이수학점과 전공과목 이수학점

을 포함하여 간호학부는 138학점, 사회복지학부는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<개정 2019.1.30., 2020.4.29.>

제38조(채플) 채플에서는 4학기 이상 “P”(pass)를 받아야 한다. 단, 편입생은 2학기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4.3.11>

제 10 장 교직과정과 보육과정

제39조(교직과정)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2학년 초에 교직과정이수(예정)자로 등록한다.<개정 2007.3.1>
2. 교직과목 이수자는 이수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된다.
3.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에 해야 하며 실습비는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.
<개정 2007.3.1, 2014.3.11>

제40조(보육과정) <삭제 2008.3.24>

제 11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

제41조(학적부 정리)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42조(학적부 정정)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3.1>

② 정정 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09.3.1>

1. 개명(기본증명서, 여권사본 첨부)
2. 생년월일 변경(주민등록초본 첨부)
3. <삭제 2009.3.1.>
4. 주민등록번호 변경(주민등록초본 첨부)

제 12장 신체검사

제43조(신체검사) ①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 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는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세칙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35조 제1항의 경우, 간호학부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사회복지학부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
 - 1. 제 1학년 수료 : 2학기 이상 등록하고 35학점 이상과 채플 2학기 이수 자
 - 2. 제 2학년 수료 : 4학기 이상 등록하고 70학점 이상과 채플 4학기 이수 자
 - 3. 제 3학년 수료 : 6학기 이상 등록하고 105학점 이상 이수 자
 - 4. 제 4학년 수료 : 8학기 이상 등록하고 140학점 이상 이수 자
- ③ 제37조의 경우, 간호학부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, 사회복지학부는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세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35조 제1항의 경우, 간호학부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사회복지학부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
 - 1. 제 1학년 수료 : 2학기 이상 등록하고 35학점 이상과 채플 2학기 이수 자
 - 2. 제 2학년 수료 : 4학기 이상 등록하고 70학점 이상과 채플 4학기 이수 자
 - 3. 제 3학년 수료 : 6학기 이상 등록하고 105학점 이상 이수 자
 - 4. 제 4학년 수료 : 8학기 이상 등록하고 140학점 이상 이수 자
- ③ 제35조 제1항의 경우, 사회복지학부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입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
 - 1. 제 1학년 수료 : 2학기 이상 등록하고 **30학점** 이상과 채플 2학기 이수 자
 - 2. 제 2학년 수료 : 4학기 이상 등록하고 **60학점** 이상과 채플 4학기 이수 자
 - 3. 제 3학년 수료 : 6학기 이상 등록하고 **90학점** 이상 이수 자
 - 4. 제 4학년 수료 : 8학기 이상 등록하고 **120학점** 이상 이수 자
- ④ 제37조의 경우,

1. 간호학부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2. 사회복지학부는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을,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이 세칙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35조 제1항의 경우, 2020.4.29. 개정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채플 이수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【 별지1 】

수료증서

성명 :
생년월일 :
전공 :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예수대학교 총장